

[소프트웨어분쟁] 대형 ERP 시스템 구축사업 분쟁, 발주회사의 프로그램 품질불만족, 사
기취소 또는 불완전이행,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- 불인정: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4.

5. 선고 2015가합561460 판결



가.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에 관하여

1) 피고 주장의 요지

원고는 이 사건 제1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의 ERP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매년 최소 약 56억 원에서 92억 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으나, 실제로는 위와 같은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실제 위 비용절감 효과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. 이처럼 원고는 위 ERP 시스템의 비용절감 효과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3공급계약 및 이 사건 용역계약(이하 통칭하여 '이 사건 각 계약')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(민법 제110조 제1항)로서 이를 취소하고, 원고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원고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(민법 제109조 제1항)이므로 이를 취소하며,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5,301,137,06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.

법원판단

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위 진단결과보고서에서 '추정 기대효과', '추정 수치', '가능성'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가 제시한 위 각 수치가 그만큼의 비용절감 효과가 반드시 발생할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이 그 문언상 명백하고, 또 갑 제3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ERP 시스템 도입 후 연간 약 42억 원 상당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, 이처럼 위 시스템 도입으로 위 진단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수치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. 여기에 판매업체가 그 제품을 홍보할 때는 그 효과를 최선의 결과를 가정한 상태에서 다소 과장하여 설명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피고의 경영진 또한 그러한 통례를 감안한 상태에서 위 결과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, ERP 시스템은 '도구(tool)'라는 특성상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용자에 따라 그 운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므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원고가 제공하는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피고의 적극적인 적응 및 활용 노력이 요구되므로 그 비용절감 효과의 정확한 예측은 몹시 어려우며, 이러한 사정은 피고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, 원고가 위 제1공급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위 ERP 시스템의 효과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.

발주사의 개발계약서, 개선과제 정의서상 채무불이행 및 계약해제 주장

법원 판단 - 발주사 주장 불인정

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개선과제 정의서는 원고의 이행의무 범위에 관하여 확정된 내용을 기재한 문서라고 하기 보다는, 오히려 원고와 피고가 피고의 회사 운영 전반을 검토하고 개선 여지가 있는 사항들을 과제로 나열한 것으로 향후 피고의 검토 및 결재를 거쳐 원고의 최종 수행과제를 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중간 단계의 문서로 봄이 타당하므로, 위 개선과제 정의서가 위 각 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행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서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.

법원 판단 -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판단, 주된 채무의 불이행으로 불인정, 부수적 채

무의 불이행만으로 계약해제 불가

또, 설령 원고가 앞서 본 부가서비스 중 일부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,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바(대법원 2005. 11. 25. 선고 2005다53705, 53712 판결 참조), 이 사건 각 계약의 경우 원고의 계약상 주된 채무는 ERP 시스템 구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이고, 특히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응용프로그램 관리업무, 서버 관리업무, 라이선스 제공 업무를 원고의 업무 범위로 정하고 있는 점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, 그 밖에 위 'SAP Premium Service 제안'에 열거된 나머지 부가서비스가 부수적 채무가 아닌 주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그와 같은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.

첨부: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4. 5. 선고 2015가합561460 판결

기술법무, 저작권, 영업비밀, 계약분쟁, 손해배상, Claim, License, R&D 제휴계약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